

## 소규모펀드 수시공시
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』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# 1. 공시내용

소규모펀드(1월)공시: 법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

※ 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처리방안결정사실(방법)공시 제외

### 2. 공시 대상 펀드

	펀드명	발생일자	원본액	순자산총액	기준가격
1	템플턴 퇴직연금 코리아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2011-05-03	2,336,961,441	2,365,787,999	1,012.34
2	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라이프 2035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2011-05-03	14,918,459	15,850,896	1,062.5
3	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라이프 2045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2011-05-03	50,312,123	51,117,758	1,016.01
4	프랭클린템플턴 단기국공채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) CLASS C-F	2011-05-03	2,122,285,934	2,179,464,083	1,026.94
5	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라이프 2025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2011-05-03	9,853,550	9,860,450	1,000.7
6	템플턴 퇴직연금 글로벌 4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2011-05-03	5,633,769,457	5,857,417,377	1,039.7
7	프랭클린템플턴 재팬 30 증권 자투자신탁(채권혼합) Class C	2011-05-03	2,093,694,383	1,853,052,226	885.06

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